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72
----------	-------

발의연월일 : 2022. 12. 5.

발의자 : 백종현 · 황보승희 · 강기윤
하영제 · 박덕흠 · 정운천
강대식 · 최춘식 · 유경준
김학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1항 및 제2항 등)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를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처분”을 “처분(제82조제1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